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실행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아래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아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총회 임원
2. 각 노회 당연직 대표 -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노회장이 장로일 경우 :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3. 각 안건심의부서 7인
4. 상임위원회 위원장
5. 연권회원 : 총회 총무, 한신대학교 총장,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 기독교농촌개발원장, 영성수련원장, 신도회 대표 3인(남신도회·여신도회·청년회),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 대표 1인
6. 단, 현 노회 구성분포에 따라 안건심의부서에서 선출하는 각 7인은 공천위원회에 일임하여 총대 목사 또는 총대 장로를 4인 이하로 하고, 한 노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숫자를 조정한다.

제4조 (임기)

위원 임기는 당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1. 총회 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2. 총회가 맡긴 업무와 다른 부서에 관계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총회

에 보고한다.

3. 총회에 제출된 1심 재판권(고소, 고발, 위탁판결, 직할판결, 행정심판)에 대한 기소는 기소결정위원이 결정하지만, 상소(고소, 고발)와 항고(행정심판) 및 재심의 건은 접수하는 대로 총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기소결정위원은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법제부장으로 한다. 기소결정위원 업무 지침은 별도로 둔다.
4. 총회를 상대로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경우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5. 정책개발 및 헌의 임무를 수행한다.
6. 총회 규정에 관계된 인사 사무를 관장한다.
7. 에큐메니컬 관계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방침을 수립한다.

제6조 (임원)

본회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총회장과 서기가 각각 이에 해당한다.

제7조 (회집)

본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가진다.

1. 정기회는 총회 직후에 회집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개최 7일 전에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긴급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7일 전이라도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회집할 수 있다.

제8조 (결의)

본회의 모든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